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8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5)
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4)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1)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21.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22.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23.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24.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25.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26.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27.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4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0)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6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8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9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0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1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1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1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1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1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2)
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1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1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1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1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1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1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1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12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12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1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12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1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1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13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13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13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13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1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0)
13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13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1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14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1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14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14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14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148.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14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상정된 안건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6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6
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6
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6
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 20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5)
..... 22
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2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4) 24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 24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 24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1)
..... 24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6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2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27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27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27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27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27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27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27

(10시22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10시23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소위 심사자료 1권 산림청 소관입니다.

1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산지전용의 정의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임산물의 재배 과정에서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산지전용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어 임업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임업경영 지원, 재해방지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산지사용 행위도 허가·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업경영활동이나 신속한 복구 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고 준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번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지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과수류를 재배하는 임간재배 활동은 임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산지전용 대상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뢰제거 등의 위험물 제거 등은 허가나 신고 대상의 별도 규정이 없어 불명확하므로 이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산지전문기관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낼 때 5년 이내에 완료된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지전문기관의 보관기간을 시행규칙에 맞춰 5년으로 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5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의 시·도지사 권한위임 사무에 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6번 토석채취허가 등 신청 시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광업권자는 채굴권자와 탐사권자로 구분됩니다. 탐사권자는 광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시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산업통상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탐사권자는 제외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부칙 사항입니다.

제1조(시행일)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2조에서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안은 시행 이후 조사분부터 적용하였지만 수정의견에서는 진행 중인 조사에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2페이지의 1번 산지전용의 정의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제외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임업경영활동이므로 산지전용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및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제도의 경우에는 도입 시 보전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6페이지의 3번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의 확대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

의합니다. 과수류의 임간재배와 지뢰제거 등 위험시설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0페이지의 4번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 역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을 유효기간 5년과 일치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의 5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장 권한을 시도에 위임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의 6번 토석채취허가 등 신청 시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광업 활성화나 산지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7페이지, 부칙 개정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 개정 내용 중 달라진 내용에서 의미 있다고 보이는 것이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소위 임업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산지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실제 관리가 됩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그동안에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이 땅의 깊이, 파내는 깊이를 50cm로 기준을 두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좀 깊이 재배를 하는 조경수라든지 마 같은 경우는 50cm 이상 파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어려웠는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보면 깊이에 따라서 자를 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업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임업경영 활동으로 인정하고 대신에 임업경영 활동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청장님, 그냥 궁금해서. 과수류의 임간재배 개념도 그렇고 이게 개정안의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과수류의 임간재배 현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과수류의 임간재배는 지금까지는 산지 과수라고 해서 임업용 과수들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 하는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배는 산지에서 재배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재배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서 농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산불 피해 이후에 산지에서 과수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간재배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수종들까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임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임호선 위원 현장에서 요청이 있고?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축적된 게 있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산지 과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일반 과수, 그러니까 농업에서 말하는 과수는 지금 산지에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어 있냐는 뜻으로 말씀……

○산림청장 박은식 전체적인 수요 조사는 없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민원들에 대한 요청 건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일종의 화마가 덮친 그런 산림 같은 경우에는 과수 농사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취지?

○산림청장 박은식 예, 다만 산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지처럼 막 이렇게 단을 끊고 개간을 하는 형태는 산지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위법령의 보완을 통해 임간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산지를 보전하면서도 임업인들이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과수류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임간재배에 대한 그런 산림 훼손이라든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여기다가 임간재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예컨대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담보할 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수류만 대령으로 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임간재배를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법령에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 정리해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 개정안에 담아서, 임간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수류만 정하는 이 법안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청장님, 임간재배가 가능한 과수류를 아까 사과·배·단감 이런 종류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임간재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풀 사이에서, 수풀이 있는 상태에서 과수나무를 심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이만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이런 식의 임간재배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수류가 제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는 과정에, 산지전용허가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봤던 산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같은 많은 재해 상황에서는…… 산사태 같은 재

해는 많은 부분이 바로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과수 재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시로 그냥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학적인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고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간재배가 불가능한 작목들이거든요. 사과밭이든 배든 다 보면 그 바닥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 수풀을 이렇게 해 가면서 조정하고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 나무 사이, 수풀 사이에 그냥 덩그러니 키워 가지고 수확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작목이 뭐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말은 임간재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의 농사짓는 성향상 기본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산지에서 그런 과수 작목을 키우기 위한 산지의 어떤 개간이나 아니면 전용들의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재해를 불러오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그래서 그 수종 관련해 대령에서 추가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 방법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산지 과수 재배를 허용하되 산지 관리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지에 적합한 재배 방법을 통해서 적합한 수종을 재배하고 싶어도 전용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종이라든지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시범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까 연장선상에서 좀 여쭙보면 토지 형질변경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준이 50cm 이상 절토·삭토·성토 이게 기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임산물 재배와 관련돼서 특히 심거나 캐는 행위를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제외를 하면 소위 심거나 캔다는 미명하에 50c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이런 걸 통해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임업경영 활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났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임간재배 방법이라든지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좀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깊이를 50cm라는 딱 이렇게 정해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임업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또 반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도 법 규정이 있어서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현실화하는 부분들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이라든지 관련된 지침들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지금 임업경영 활동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장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이게 무수히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고 사실은 행정에서 사전에 관여를 못 해요. 다 사후에 고발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기준마저 빼내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안 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임업경영활동 속에 포함되면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영계획의 인가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점점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걸러 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산지일시사용허가라든지 산림경영계획 인가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신고받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임업경영활동이라고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산림청장 박은식 만약에 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공무원들이나 현장 공무원들이나 특사경들이 인지할 경우에는 산지 불법 훼손으로 산림관리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를 하려면 소위 임업경영활동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경영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안 하고 하면?

○산림청장 박은식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자가 소유 산지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타인의 소유에서 한다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제 점검·조사 기간들을 운영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주변이 위협할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법을 수정의견 18쪽에 여기는 임간재배만 규정을 하고 이 조에서 정하는 임간재배의 법적 의미라든가 또 수종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위임조항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수정 제안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전문위원 이현종 제2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1번 토석채취지 복구 전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 후 복구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타용도 활용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보전산지와 달리 토석채취지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림토석협회 및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반대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골재협회에서는 토석채취지 복구 전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연평균 약 12건, 17ha의 토석채취지가 타용도로 활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번 토석채취지 복구의무 면제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토석채취지에 대하여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서도 신규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 등을 조건으로 복구의무가 면제 가능하다는 점과 토석채취지 활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30페이지, 1번 토석채취지 복구 전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시행 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토석채취지의 타용도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인 한국산림토석협회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번 토석채취지 복구의무 면제 요건 추가 관련해서도 현행 법률의 유지, 즉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시행 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토석채취지의 타용도 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현행 법령 내에서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복구의무를 면제받아 타용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률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지 복구 전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게 전용허가를 조금 더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의 제안인 것 같은데.

○산림청장 박은식 토석채취지에 대한 활용을 촉진해 보자라는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발의된 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보전산지 50ha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것 플러스 복구준공검사 전 토석채취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동안에는 안 받았던 것들도 추가로 받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찬성하고 있는 한국골재협회의 찬성의견과는 달리 오히려 더 규제가 될 거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실제로 한국골재협회에서는 현장에서 토석채취지 복구 전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내 보면 연 17ha, 12건 정도는 그런 방법으로 이미 복구 전에 타용도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심의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 문제는 있지요, 새로 심의가 추가되니까.

그런데 ‘토석채취지 복구 안 하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해야 되겠다. 토석채취된 곳에 대해서는 제대로 복구를 해서 자연 훼손에 대한 정상화 작업, 회복 작업 이것을 담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의견 같은데 그냥 단순히 ‘규제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장님,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복구준공검사 전에 토석채취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활용하고자 하면 현행도 다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제도를 운영할 때 보면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석채취를 해 놓고 복구를 안 하고 방치했다가 다른 시설로 쓰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원래 복구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이행 않는 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 꼴이 되거든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장님, 복구 의무기간 내에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치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런데 복구 전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있나요?

○산림청장 박은식 토석채취를 했는데 그 지역을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에 사용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다 들여서 복구를 하고 다시 또 전용허가를 받아서 그걸 다 뜯어내서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허용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를 방기하고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타용도 전환을 해서 법적인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의 제도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어떻게 관리해요?

○산림청장 박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예치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놔고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복구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 타용도로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12건, 17ha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현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 대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소위원장 윤준병 나는 추가로 하는 것, 절차를 줄여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토석채취지 복구 전에 산지전용하면 소위 복구를 위해서 예치비 있잖아요, 예탁금. 예탁금은 국고로 회수합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소위원장 윤준병 확실해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소위원장 윤준병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석채취지 복구 전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해 줄 때, 그렇게 해 주는 허가가 될 때는 토석채취지 복구를 위한 예탁금 있잖아요, 그것은 국고로 회수하냐고?

○산림청장 박은식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걸 지금 산림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산지의 토석채취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해 놓고 이용하고 그냥 가 버려요. 그리고 예치와 관련된 내용도 집행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산지 훼손된 게, 방치된 게 많아요. 그러면 복구 자체를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이것이 중요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복구 예치비가 면적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복지국장 조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를 나눠서 평방당 10만 원 미만인가 그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가 자체는……

○임미애 위원 가로세로 1m²당……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예, 평방미터당……

○임미애 위원 10만 원 미만인 걸로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 중에, ‘예치비가 국고로 환수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셔서 좀 의외였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복구비 관련해서 원래 복구비는 복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다 완료가 된 경우에는 그 예치비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임미애 위원 이게 작년예요,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건데요.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불법인 상태에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국감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유림 같은 경우에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국감 때 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거든요, 이게.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불법 사례가 맞고요. 그런 것은 법적 조치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준공검사 의무가 도래하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시기 전에 타용도 전환이라는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용이 될 경우는 복구를 하지 않고 곧장 타용도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복구비 단가는 경사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석채취·채광 같은 경우는 10도 미만일 경우에 헥타르당 2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도 이상일 경우는 한 7억까지도……

○**임미애 위원** 예치비가 좀 되네요, 규모가?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복구비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의무기간 도래 전에 타용도 전환이 될 경우에는 일단 복구비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납부한 분한테. 대신에 산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산지전용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청장님, 산림청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주로 시도에 위임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시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되고?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구준공검사 전에 타용도로 바뀌는 사항들이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보통 평균적으로 12건이고요, 연평균 최근 5년 동안. 24년의 경우 11건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17건이 22년에 있었고 적게는 21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치면 평균 한 17ha 정도……

○**이만희 위원** 평균 17ha,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큰 편이……

○**산림청장 박은식**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주로 어떤 걸로 용도가 바뀐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주로 그 지역을 복구하게 되면 산지로 복구하게 되기 때문에, 채석

장 같은 경우는 돌이 노출되기 때문에 단을 끊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형태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게 한 해에 보통 한 12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바뀌는 게 많습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정확하지는 않습지만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폭포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광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용·제조업용 공장부지 이런 형태로 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공장부지로도 쓰입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예.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궁금한 게 이걸 복구 이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산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공적 목적이 훨씬 더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에 얼마나, 이걸 규제를 완화할 정도로 행정에 그렇게 뭐가 많나요? 어떤가요? 이것 저는 타당해 보이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산림청장 박은식** 첫 번째는 한국골재협회에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종덕 위원** 당연히 그 협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사업자들이니까. 그런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산지를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규제가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토석채취허가 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산림을 보호하는 조치인데 이것은 토석채취허가가 나가서 토석채취가 이미 진행이 돼 토석채취가 다, 쉽게 말씀드리면 훼손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 훼손이 돼 있는 상태를 하나는 일반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는 타용도 전용을 통해서 타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그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방법은 두 번째의 효율성을 높이기 전에 또 다른 심의를 한 번 더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면서 타용도로 활용되는 것도 규제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현행 시스템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더 번거롭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규제완화 효과도 없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없고 이런……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미 훼손된 것이니까 이걸 나중에 다시 복구해도 산지로 쓰기는 어렵다, 다른 산업용도·상업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산림청장 박은식** 일부 전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심의에 통과된 지역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부분 기본적인 방침은, 산지로 복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심의를 통해서 더 이상 훼손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우리 산림청에서 좀 시각을 바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토석채취에 따른 난개발·남용 이 부분을 좀 억제하고 복구를 진작시키는, 신중하게 복구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을, 예외를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안인데 그냥 예전에 했던 내용 쉽게 하자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복구 예치금 자체는 반환을 안 해요. 그리고 산지전용부담금으로 대체합니다. 산지전용부담금 이거 안 해도 산지전용하려면 내야 되는 것이어서 토석채취허가를 안 받은 사람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구해야 될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내용을 담보하려면 복구 예치비라도 귀속되도록 해서 실제 복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단순히 ‘예전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어서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산림 보전을 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이나 또 지금 현실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산림훼손, 토석채취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바꿔야 될 사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내용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위원장님, 복지국장 조영희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이 법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골재협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이걸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인식해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그냥 타용도로 전용하는 게 아니라 복구를 해라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 차라리 심의회에 올려서 심의회의 판단을 받아 보면 본인들이 타용도로 전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했던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제도가 다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그 제도 속에서 새롭게 뭔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규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전종덕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사용 용도가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해야 하는 그 복구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 용도는 복구해라라고, 다시 전환해서 산림으로 보전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산림청장 박은식** 대부분 저희가 다시 산지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2건, 한 17ha 정도만 타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좀 감이 없는데, 말씀드리지만 산림청은 산지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마치 이 안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재협회의 그런 이해가 반영된 거라 해서 고민이 좀 다르긴 한데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다든지 그런 지침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가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있습니다. 있고요.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안 해 주니까 심의를 받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 저희 생각에는 활성화되지도 않거니와 또 산림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37쪽.

○**전문위원 이현종** 제3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1번 대형산불 등에 따른 임업용산지 지정해제 요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임업용산지에서 대형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임목이 대량 소실·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여 피해지역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산림훼손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제4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자 신청에 의한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단계별 준공이 허용된 사업으로 중간복구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복구비 추가 예치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발생시키고 주변 산림훼손 및 산림재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38페이지의 1번 대형산불 등에 따른 임업용산지 지정해제 요건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불·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임목이 대량으로 소실되거나 고사한 경우만으로 임업용산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임업용산지 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임목을 고사시킨다든지 또 방화한다든지 하는 악용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참고로 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복구를 지원하자라는 측면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든지 산림경영특구와 같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담을 수 있는 제도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서 이것 일반화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45페이지의 최형두 의원님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1번 사업자 신청에 의한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사업의 특성상 중간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희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연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보전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유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용 내지는 비농업용으로 분류되는데 농업용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비농업 용 같은 경우는 택지나 공장용지, 도로라든지 골프장, 스키장, 묘지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지전용하는 규모는 연간 640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전산지가 한 1500ha, 1480ha 되고요. 준보전산지가 한 5000ha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아까 3쪽의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해도 실제 남용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만연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산림청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것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아까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그 문제, 이거 산림청에서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볼 때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장님,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사실은 더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받았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 토석 관련된 업계 입장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규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산지 토석채취허가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산림을 무분별하게, 토석채취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토석채취가 진행돼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지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앞에서 윤영석 의원님 대표발의한 내용 또 정희용 의원님 대표발의한 내용 이거는 계속심사하도록 하고 1항과 4항에 대해서만 여기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4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11시11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49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1번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석재 용도의 석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의 석재채취업에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한, 필요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번 석재채취업자 및 가공업자의 폐업신고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취소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가능하므로 개인 사정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자진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전 처분의 승계 규정 등을 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3번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제를 선정제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입 이후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인증제도를 좀 더 요건이 완화된 선정제도로 간소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통 석공예 기술은 소유자 현황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이므로 공모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발굴 및 추천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4번 우수사업자 선정 취소 등 청문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우수사업자 선정 및 전통 석재제품 선정·인정의 취소,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 마련은 필요한 절차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누락하였는바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부칙 조항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50페이지의 1번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명확화는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 법률 용어가 아닌 산림골재채취업 용어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4페이지의 2번 석재채취업자 및 가공업자의 폐업신고 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석재채취업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명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와 재등록 사업자에 대한 승계 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8페이지, 3번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제를 선정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수사업자와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전환해서 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전통 석재제품의 선정·인정에 지자체의 발굴·추천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8페이지, 4번 우수사업자 선정 취소 등 청문 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청문 절차는 우수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에 대한 반론권 보장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5)
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8)

(11시16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정부가 제출하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73페이지입니다.

6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입니다.

1번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의 교육정원은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1번 정원의 조성·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 및 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원에 대해서는 경비 지원의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2페이지,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74페이지,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80페이지, 1번 정원의 조성·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 준용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정원 등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청장님, 우선 개정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랑 연관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 제1호가 어디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순천만입니다.

○김선교 위원 2호가 어디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태화강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모두 남부권에만 편중돼 있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국민들은 이 국가정원에 대해서…… 왜 웃어?

○산림청장 박은식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국가정원의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왕복 7~8시간씩 이동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과 수도권 역차별 문제는 이제 산림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이것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진전이 없어, 지금 웃는 것처럼.

○산림청장 박은식 웃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5국 3특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정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김선교 위원 그래서 국가정원 승격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국가정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항들이 정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국3특 국가발전전략과 맞물려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와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교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장 박은식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금년 내로 할 겁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거기가, 우리 지역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논리적으로…… 30만 m² 이것도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그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오.

○산림청장 박은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림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4)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1)

(11시22분)

○소위원장 윤준병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선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선교 위원 저는 오늘 농민을 외면한 채 독선과 독주로 점철된 농림법안심사소위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해수위는 정과를 초월해서 농어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합의 처리라는 자랑스러운 관례를 지켜 왔습니다. 현재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해양수산소위가 여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윤준병 소위원장 체제의 농림법안소위는 어떻습니까? 여야 간 안전 협의와 일정 조율은 사라졌고 오로지 편파적 상정과 일방적 통보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를 산회시킨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농협법의 경우 당사자인 농협 조합원들조차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독단적 처사입니다.

윤준병 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농어민의 현실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농어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언제든 열려 있지만 이러한 독단적 소위 운영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독주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필버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소위 운영으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제가 먼저 질의를 했지요, 농협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 주세요.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냈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방금 산림청 소관에서 처리를 하신……

○**이만희 위원** 이것 상정했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어떤 거요?

○**이만희 위원** 이거요.

○**소위원장 윤준병** 상정했잖아요.

○**이만희 위원** 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계속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으로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현재는 학생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는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3건의 의원발의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식품의 구매 및 취득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1번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시책 및 지원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전제가 되는 식품접근성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시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3건의 개정안은 4페이지 중단에서 보시듯이 식품접근성의 판단 조건으로 신체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가 식품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생활권 내에 각 개인마다 달라지는 개인적 조건인 신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 지리적 요인만을 반영해서 식품접근성을 정의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 마련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개정안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3번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마다 각기 다른 개정 방식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를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에 포함되도록 하고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아 대신 민간 사업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쪽,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개정안은 동의를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식품접근성 제고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경제적·신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지리적 부분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의 마련 의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23조의8 각호를 삭제해서 실태조사 이후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시면 실태조사 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안과 같이 6개월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1시31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0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하세요.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김선교 간사께서 우리 당이, 윤준병 위원장의 소위 운영 사안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견과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말씀도 없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든지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다음 일정으로 간 점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위원장님의 소위 운영 진행과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저는 그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어떤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까 농협법과 관련된 안건이 아닌 상황에서 농협법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지금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이만희 위원 농협법 이 자체에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만희 위원 제 얘기는 전반적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 안건 선정과 관련된 사항, 안건 선정이 무슨 위원장님 본인의 하나의 권한이십니까? 저는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 다 하셨어요?

○이만희 위원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또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서 논란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만희 위원 이게 논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떤 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이만희 위원** 위원장이 가지고 계시는 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나면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만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듣고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드릴지는 제가 판단할 거니까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소위입니다, 소위. 소위는 전체회의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위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소위입니다, 소위.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를 위원장 의견이라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만희 위원** 그래서 마치 주고 안 주고가 본인의 권한인 것처럼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사회를 볼 때 그 권한은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만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위입니다, 소위.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고요.

물론 우리 이만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셔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논의가 돼도 당장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농식품부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내용은 후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급한 건 먼저 하고 또 이후에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상정되기를 희망해서 제가 심지어 ‘소위를 별도로 한번 개최해서라도 농지법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내용 다 논의해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수용이 안 돼서 일단 별도로 요구하신 내용이 정리가 안 됐고.

물론 오늘 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농협법 심의를 좀 늦춰서 하자는 의견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의견이 개진됐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제가 판단컨대는 작금의 농협법과 관련된 집단 데모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성명도 발표하고 또 농협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왜곡되는 현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안된, 발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심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우려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이것을 오히려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도 야당……

○**김선교 위원** 간단히 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중간에 개입하지 마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를 해서 농협법을 빼자고 하는 내용은 수용을 안 했지만 농협법 이외에 산림청과 관련된 법안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컨대는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저번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거기에 관련된 안건 전체를 한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만 하자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넣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의사일정 협의를 해요.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관철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의사일정이 엉터리다.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위원님들이 공유도 하시고 축조심의까지 한번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 특히 조합장들이 지적하고 있는 독립성·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오히려 기득권을 더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지 이거는 논의를 해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축조심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매도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잡아서 논의하는 시간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는 저는 이번 윤준병 위원장의 소위 운영 진행과정을 보면서, 특히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서 정말 부당하다. 심지어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안 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만나시는 많은 농민들한테서 이 농지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논의의 대상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그 내용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이유 자체도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하니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으면 그러면 법안소위에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들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후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올리시고 얼마나 여기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농지법,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이 말 자체를 농협법 논의 자체를 딜레이시키기 위한 그런 꾀로는 이해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김선교 간사님한테, 간사방에 엄청나게 많은 컴플레인도 하고 제가 오해 아닌 오해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여당께서,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날짜 지정하고 통보받고 안건 선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간사는

뭐 하나? 그런데 지금까지 김선교 간사가 이런 식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떠들면 떠들었지.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꼭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일정 조율과 협의 이런 간사간의 어떤 내용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당사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편파적인 상정, 일방적인 통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서는 충분히 협의와 조율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다 하셨어요?

○이만희 위원 제가 물어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다 하셨나고요.

○이만희 위원 답변하시면 또 답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서 일문일답하는 건 아니고요.

○이만희 위원 제가 묻는 게 잘못됐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우리 이만희 위원님한테 일문일답하는 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답변드릴 테니까……

○이만희 위원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해 왔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런 안건에 대한 편파적인 상정이나 일방적인 일정들에 대한 통보 같은 것들은 결코, 아무리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준병 위원장께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 농해수위의 전통을 지켜서 꼭 좀 원만하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재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감사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희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100% 충족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가능하면 다 녹여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날짜 잡고 일정 잡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우리가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정해 놓고 해요. 예를 들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은 소위 일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정해진 그 일정에 따라서 소위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운영은 그런 방식에 따라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윤준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소위 회의 운영과 관련한 안건이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비교섭단체인 제가 제기할 문제지 교섭단체이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격주로 화요일 날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고 그것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안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히려 비교섭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좀 늦게 통보받고 이러면서 훨씬 더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그런 제기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님 간에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해서 가지

고 이런 의사진행이 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듣고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할 사안을 교섭단체시고 또 협의 대상이신 간사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회의가, 충분히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런 의사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한 번 더……

○문금주 위원 이제 그만하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김선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지.

○문금주 위원 계속 그렇게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김선교 위원 1개월에 2회씩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이 의견 낸 것처럼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여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합의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협법을 하나의 예로 들면 공청회, 주민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법안을 뭐 아까 보니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썩어 빠진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석전문위원, 중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모두 9건으로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개정안 주요내용에서 보시듯이 개정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건의 윤준병 의원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 문금주 의원님 안, 전종덕 의원님 안이 이 네 가지 영역의 개정사항에 대해 모두 제안을 해 주시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임호선 의원님 안은 준법감시인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신장식 의원님 안은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와 조합장 재임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임미애 의원님 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제안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농협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들이 농협의 자율 규제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중앙회장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견제하고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농협의 자율 규제 역량 미비로 외부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이므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에 따른 권한의 집중 또 선거 과열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 발생과 더불어 또 직선제를 할 경우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정합성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위 자료, 조문 자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정부대안 내용을 같이 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조합장의 재임 횟수 산정 기준 마련 및 이사·감사 연임 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김선교 의원님 안의 경우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의 연임도 2회로 제한하려는 것이고 또 신장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 이후에 퇴임하거나 또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선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장기 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의 악화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7페이지의 검토의견에서 보시듯이 신장식 의원님 안의 내용은 현재 새마을금고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의견은 농협 조합장의 경우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재임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식 의원님 안과 같이 할 경우에 임기만료일 2년 전에 퇴임한 경우는 오히려 재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입법취지와는 달리 연임 제한이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김선교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선교 의원안을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산림청장처럼 자세한 내용을 좀 언급해 가면서 잘 알려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라도 재임하였다면 신장식 의원님 안과 같이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정 목적과 달리 제정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재임으로 인한 권력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는 김선교 의원님 안과 같이 임원인 조합장, 이사·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9페이지의 2번 임원 결격사유 강화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결격사유를 추가함에 있어 신장식 의원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선 또는 징계면직 요구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에 더해 신장식 의원님 안은 이외에도 직무정지 또는 정직처분을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처분 대상이었을 것으

로 통보된 퇴임·퇴직 임직원을 추가하면서 퇴임 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임미애 의원님 안은 사기, 횡령·배임, 배임수증재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님 안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조합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에까지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격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법의 경우도 직무 관련 재산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은 5년, 벌금형은 3년 자격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3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벌금형은 3년입니다. 자격제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것으로 14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형을 받은 자의 자격제한 기간을 7호의2부터 8호의2까지 차등해서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울러 현행법 9호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9호의 내용이 수정안의 8호와 8호의2에 의해 다 포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자세한 얘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가산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에서 ‘처분의 종료일’로 수정하고 재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는 5년, 벌금형의 경우에는 3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는 10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퇴임 임원 등에 대한 통보 주체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기반영태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퇴임 임원에 대한 통보 주체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통보 주체가 어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퇴임 임원의 처분 통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회장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합감사위원장과 금융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추가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면 회장이든 농식품부장관이든 위원장이든 금융위원회든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이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권한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도 감사를 통해서 시정명령이라는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중앙회장도 자체적인 감사라든가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 그러면 결국 통보 주체에 조합감사위원장이냐 금융위원회를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신장식 의원님 안에……

○**이만희 위원** 몇 페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일단 16페이지의 6의4를 잠깐 보시면 제146조제3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감위 위원장과 관련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64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장관입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와 관련되는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체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조합원 제명 사유에 선거범죄 추가에 관한 개정은 김선교 의원님 안 내용으로서 조합원의 제명 사유에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선거범죄를 방지하고 선거질서를 확립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뭘 의석을 정돈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오전에 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착석도 안 한 사람한테 뭘 하십니까, 이렇게!

○소위원장 윤준병 빨리 착석하세요! 착석하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회의 진행할 거니까 착석하시라고요. 논의하시자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 중요한 법을 다루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논의하시자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가능하면 많은 위원들이 참석한 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이 혼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혼자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요? 끌어내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계속 서 계세요.

진행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뭘 진행을 해요? 위원장이 날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잘못된 얘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잘못된 얘기 하고 있잖아요! 회의 진행을……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잘못된 얘기를 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회의 진행을 방해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시라고요. 앉으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시라니까요. 앉으시라니까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말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이러세요, 진짜로.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십시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감정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앉아서 발언하겠습니다, 다시.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협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또 부정·비리·비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중요한 법안들…… 우리 농해수위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지역에 나가 계셔도, 각 지역에 있는 농협조합들이 하는 역할들이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현장 일선의 목소리도 좀 들어 보시고 또 농협 관계자들도 한번 불러서 얘기 나눠 보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위원장님 생각에는 아주 시급한 법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토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의 자리가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의 축조심의도 물론 시급한데,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경기도당 공심위원장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으니까 아마 본회의 마치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위원장께서 그런 것도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이고 있고 저도 양쪽 의견 다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면 오히려 지역에 분란만 생기고.

오늘도 오셔서 얘기를 하시던데 정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저도 정부안하고 좀 다른 법안 발의를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이 논의의 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오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제가 파서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왕 오셨으니까 오늘 최소한 일회독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정부가 처음의 정부안에 비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생각도 들어 봐야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우리 지역의 조합원들, 조합장들께 ‘정부는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얘기도 안 들어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회독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정부의 생각이 어떻더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려 줄 필요는 있는 거고……

○이만희 위원 정부안이라는 것이 윤준병 위원장 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문금주 위원 다 포함해서요.

○이만희 위원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은 없거든요. 지금 문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윤준병 위원장님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예.

○이만희 위원 말씀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법안들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제가 뭐 여기서 하루 연기해 가지고, 다음 기일까지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해 보시지요. 논의 한번 해 보게……

○이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법안소위를 한 전례도 별로 없었어요. 다 본인이 저기에 있으니까 그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여기 법안소위에 들어올 때 보면 정말 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말씀하신 대로 축조심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적인 저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석하고 자리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양해 못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안 자체가 물론 급하다,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직회부까지 된 사항 같으면 위원

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만큼 급속도로 왔으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일단 이 내용과 관련된 의사일정은 이미 공지된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전체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자 하는 내용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오늘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축조심의를 해 놓고 또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따라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제 외부에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축조심의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축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보시자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보고 나서 위원별로……

○이만희 위원 다른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면 보장을 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하루이틀 할 그런 사항, 급한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가 회의를, 소위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소위 일정을 가지고 해도 그 일자를 ‘임의대로 잡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게……

○문금주 위원 위원님, 일단 한번 들어 보세요.

○이만희 위원 보십시오. 날짜를 미리 잡아 놔다, 화요일로 딱 정해져 있다, 이러니까 뭐 상관…… 그게 아닙니다. 정해지면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간사 간에 그 날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짜를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한다, 화요일 날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도 어쨌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정도 하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다들 바쁘시잖아요. 일정들이 많고 뭔가 좀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법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반발도 심한 법을 갖다가 지금 몇 안 되는 분들이 토론한다는 게 졸속으로 법안심사 하려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한쪽 정당의 의지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을 좀 늦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면서 법안심사에 임하는 모습들 보여 주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도 힘이 더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걸로 같음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박준태 위원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진행하세요.

○이만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좀 도와주십시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금주 위원 아니, 정부의 생각을 좀 들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단ика요.

○이만희 위원 그 얘기를 우리끼리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많이 참석했을 때 하면 안 됩니까?

○문금주 위원 일정을 알려 줘는데도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이만희 위원 지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금주 위원 그리고 국힘하고 민주당만 있습니까? 지금 진보당도 있고.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있을 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일정을 다시 잡아서라도……

○문금주 위원 제가 지금까지 법안소위 몇 번을 해 봤지만 100% 참석률 안 됐어요.

○이만희 위원 사실은 이게 직회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직회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금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만희 위원 아니, 이 소위가 위원장 겁니까? 어느 누구 붙잡고 물어보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진행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빨리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28페이지, 4번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위원장 윤준병 더 이상……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더 이상 이 문제가……

○소위원장 윤준병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만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데 조금 시간을 갖고……

○소위원장 윤준병 앞으세요. 앉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정회했다가 말씀 나누고 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냥 간 것도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시자고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회했다가 말씀 나누고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4번 조합의 회계장부 공개요건 완화에 관한 2건의 개정안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 공개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으로서 윤준병 의원안과 전종덕 의원안 모두 조합의 열람 청구요건을 현행 ‘조합원 100인 또는 3% 이상의 동의’에서 ‘조합원 1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윤준병 의원안은 조합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 정보공개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조합원의 열람 및 사본 청구 대상에 이사회 의사록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의사록도 추가하는 한편 서류 등 공개 요구에 대한 통지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요건 완화는 조합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에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므로 이를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1인 이상보다는 청구요건을 다소 강화하고 또 반복되는 청구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과 정부대안은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자구를 정리한 내용으로 30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농식품부 의견, 대안 내용은 관계기관 의견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윤준병 의원님 안의 통지기간, 거부요건,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청구요건을 조합원 1인에서 조합원 1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을 할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의원회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 65조 2항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현행법 65조 2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총회 의사록만 공개를 하고 대의원회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거기 정부대안 보시면 ‘총회의 의사록(대의원회 의사록을 포함한다)’ 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은 당초 1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수여서 민원 처리 요구가 너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또는 100분의 3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남용 우려를 좀 완화하고 또 남용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처럼 2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해서 실제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담겨 있는 1인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자는 게 정부의 대안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기는 ‘조합원 1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조합원 10인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분의 3이라고 하는 3% 룰을 적정한 기준이라고 하면,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그냥 단순히 조합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입장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행 기준에 100분의 3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으로 하게 되면 현행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현행법이 그러면 예컨대 이 기준을 10분의 2로 하든지 1로 하든지 그것을 논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10인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개혁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전종덕 위원 저는 조합원의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과도해 가지고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합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면 누구든 관련 이사회든, 이견 다 공식 회의인 거잖아요. 또 조합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합원이면 누구든 이것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공개 청구하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인도 기본 취지에서 조금 더 후퇴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인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신청하면,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관료 생활하면서 민원인들 상대해

보면 악성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민원 처리 이것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 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제한 조건을 주기는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어찌 됐든 1인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강화된 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관님, 지금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는 안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면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만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럴 경우 청구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이걸 비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1인 정보공개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농협이 독점 기업이 아니잖아요. 독점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농협도 금융을 위주로 해서 유통도 하고 제조도 하는 정말 경쟁 관계에 있는 하나의 기업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든 조합원들이 다 선의에 의해서 좋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특정한 조합원들이 다른 경쟁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남용할 우려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단순한 회의록도 문제지만 고객에 대한 정보 문제라든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청구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협 자체의 자율성도 엄청나게 위축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안들이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회장 직선제와 겹치게 되면 얼마든지 관련된 상대방에 대한 악용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1인이라든지 10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선정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임호선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조금 더 강화된 차원으로, 현행보다는 조금 느슨하더라도 1인이니 10인이니 이런 숫자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법안을 보셔야 되는 게요 조합장은 정관 그다음에 총회 회의록, 대의원 회 의사록 그다음에 조합원 명부 이걸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정관이랑 이것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의원회 회의록이나 총회 회의록도 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이 신청을 하면, 조합원이 신청하면 이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업상 비밀이거나 비공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 거지요. 이것도 조합원에게 공개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요건을 오히려 확실하게 완화해 주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농협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록 같은 것은 요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2항에서 그냥 다 할 수가 있고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회계장부입니다.

○임호선 위원 회계장부입니다. 전종덕 위원님, 30쪽의 4항을 보시면……

○전종덕 위원 아, 회계장부.

○소위원장 윤준병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차관님, 이것 지금 회계장부 열람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둘 거냐 이 문 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상법에서 어떻게 두고 있어요? 3%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상법 466조 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니까 지금 이것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 요건을 완화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농협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처 럼 현행 100인 이상 또는 100분의 3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명을 모으기도 힘들고 100분의 3을 모으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인도 제안을 했 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10인 정도 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수준의 회계장 부 열람권한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해 놓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그거보다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농업협동조합에서 뭔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 어야지 하는 거지, 이 형평을 다 맞춰 놓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만 특별한 사정으로 완화 한다?

회계장부 열람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명성 제고 취지는 좋은데 전부 다 회계장부 가져다가 서로 상대 공격하고 욕하고 소송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을 우려해서 공개될 경우 지역농협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특별히 비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처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 내시니까 마지못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도 교육지책으로 대안 정도 제시한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박준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우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 반대합니다.

○**송옥주 위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차관님, 28페이지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인원별 조합 분포가 있는데 이게 현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100인을 기준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 공개요건에 해당돼서 여기에 있는 인원수와 관련된 조합별 분포를 분석해 놓은 부분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실제적으로 조합원 100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회계장부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로 이것을 분석해 놓으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00분의 3 적용하시면 됩니다. 100인 또는 100분의 3 조합원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7개 조합의 경우에는 10인 이하가 100분의 3이 되는 거고요. 65개 조합의 경우에는 11~20인이 청구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100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분포도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준이 10인이 적정하냐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내부적으로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100분의 3으로 하거나 또는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100분의 3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하면 이 내용들이 꽤 많은 부분 포섭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중에 100인 이상이어야 되는 내용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10인이라고 하는 내용도 적정하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20인에 대한 내용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보다 인원이 좀 많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집행간부 임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경영위원회 회의내용 이사회 보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현재 중앙회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임면하는 집행간부의 임면 시 이사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또 중앙회의 중요 업무사항을 심의하는 경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중앙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회의 경영 관여가 확대될 경우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간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필요한 체계·자구 등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경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35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정부에서도 중앙회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집행·실행 단계의 책임성 보완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경영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36페이지의 6번 독립이사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김선교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의 수를 9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또 이사 정수를 28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상호금융 소이사회 내의 독립이사 비중 또한 현행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독립이사의 독립적 지위와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장하고 독립이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이사회 안건 상정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이사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려는 그러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독립이사는 2025년 7월 상법 개정에 따라 종전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상법도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김선교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추가설명 없어요,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이사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조정이라든가 명문화시키는 독립이사의 권한 운영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의사진행성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법안이 너무 많은데 지금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게 박덕흠 의원님 안이랑 임호선 의원님 안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도 없다고요. 그러면 심사자료 가지고, 내용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을 여기서 그냥 일독한다는 취지로 하면 ‘다 심사 거쳤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제대로 내용을 보고 전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고 각 단체는 어떤 의견을 냈고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냈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파생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정확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선거 앞에 일정들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도 적게 오신데다가 그다음에 이 예민한 법을, 이 복잡한 법을 검토보고서도 없이…… 지금 몇 건입니까? 8건은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하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의견 한번 준다 이런 취지 같은데 검토보고서도 제출이 안 된 상황이라면 정부도 국회 쪽에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못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정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검토할 내용들이 있지요?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2건 나오고 나머지는 올해 2~3월부터 제출됐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일은 더 가깝습니다. 이것 다 직회부해 가지고 소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이 안은……

○이만희 위원 지금 다른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습니까?

○박준태 위원 없습니다. 지금 10건 중에 2건밖에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농협법 개정안은 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12월……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 말고요. 이 검토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의견 낼 내용 있으세요?

○이만희 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을, 거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예요.

○박준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법안이 가장, 이게 지금 내용이 민감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도 없는데 지금 저희보고 심의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수석전문위원이 답변 좀 드리세요. 이미 했다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아니, 차관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말고 이 건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 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이만희 위원 검토보고서가 어디……

○박준태 위원 뭐가 돼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랑 심사자료가 어떻게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금주 위원 돼 있다니까요. 뒤에 보세요, 뒤에 봐.

○박준태 위원 뒤에 어디요?

○문금주 위원 뒤에 보면 다 의원님들……

○이만희 위원 뒤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답변해 보세요. 검토보고서 만들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소위에 직회부가 됐기 때문에 검토보고절차는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박준태 위원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처리하시는 것은.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십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윤준병 위원장님!

○박준태 위원 농해수위도 법사위처럼 하시네, 보니까.

○이만희 위원 지금 여기 관련된 법안에……

○소위원장 윤준병 심사해 보자고요.

○박준태 위원 내용이 있어야 심사를 하지요.

○이만희 위원 아니, 심사는 자료가 없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의문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하실 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이만희 위원 질문하는 것하고 이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 검토해서 의견들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현황이 어떻게……

○이만희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하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검토의견에 다 의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 제일 중요한 정부안이라는 윤준병 의원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자체도 작성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검토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태 위원 이거는 약식 자료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조문별로 검토의견 있잖아요. 그 내용을 취합……

○이만희 위원 무슨 이걸 검토 자료라고 합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억지를 쓰셔도 적당히 쓰셔야지. 검토보고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심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위원장께서 잘못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검토의견을 잘 보세요.

○이만희 위원 저희들 바보 만들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40쪽.

○이만희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도 없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야?

위원장님,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다룰 사안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 의견 가지고 당사자들 얘기도 듣고…… 한 번 읽어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박준태 위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검토의견이 다 들어 있으니까 검토의견 내용을 보시면 돼요. 검토의견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만희 위원** 윤준병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자,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40페이지, 7번 준법감시인 기능 강화 및 경제지주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임호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수를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중앙회 준법감시인 임면 시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며 준법감시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준법감시인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중앙회와 같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종덕 의원님 안은 준법감시인에 중앙회 종사 경력자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내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로서 현재 그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준법감시인 수를 확대하는 임호선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윤준병 의원님 안에서 지주회사나 자회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수용 여부와 연계를 해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전종덕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본질적으로 내부의 자율규제 기능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준법감시인이 일정 정도 업무 이해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인사 임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안은 전종덕 의원님 안과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된 내용으로서 44페이지부터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만희 위원** 여기까지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중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에서 조합 등이나 중앙회 임직원은 제외를 하고 내부인으로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의무는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임호선 위원 준법감시인의 숫자 더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현재 1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임호선 위원 1인을 유지한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왜냐하면 농협감사위원회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다음.

○이만희 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더 심도 있게 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제 회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늘은 오후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법안소위에 일곱 분 참석하셨는데 역대 법안소위보다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회독해서 문제점도 같이 노출시키고 또 정부의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협이 부정·비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개혁법안이 제출된 거예요. 그러면 농협 개혁법안을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면 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농협에 통제가 되지 않는 불법이 계속 만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의사결정을 방해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제대로 심사하시고 의견 제시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같이 토론해 보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만희 위원 말씀이 정말 과하시네요. 누가 개혁을 가로막아요?

○전종덕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만희 위원 누가 개혁을 가로막아요?

○전종덕 위원 지금 계속 회의 방해를 하는 것은 그렇게 비쳐진다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무슨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런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게 맞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요……

○이만희 위원 이런 농협, 직회부하는 게 맞아요?

○전종덕 위원 그동안도 비슷한 법안들 직회부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발언하신 다음에 또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그동안도 비슷한 법안들 직회부해 왔다고요.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존경하는 전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개혁을 가로막다

니요! 누가 개혁을 가로막아요?

○전종덕 위원 지금 위원님이……

○이만희 위원 지금 이런 중요한 법안을 직회부해서 심사보고서 제대로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제 발언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하도 어이없는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태도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전 위원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박준태 위원 모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모욕하는 거지, 그게!

○전종덕 위원 지금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희 위원 회의를 제대로……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 법안 자체가 직회부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누가 개혁을 가로막는다고 그러세요?

○전종덕 위원 비슷한 법안들 직회부해서 논의해 왔잖아요, 그동안도.

○이만희 위원 저는 1년 반 넘게 기다렸습니다, 제 법안 하나 검토되는 데.

○박준태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법안 10개가 나왔는데 8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병합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병합해서 볼 수 있지요. 직회부할 수 있지요. 10개 중에 8개를 직회부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런 경우 보지도 못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알았어요.

다음.

○이만희 위원 아니, 이게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말씀하시든지 뭘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소위원장 윤준병 직회부할 수 있어요.

○이만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할 수 있다고요.

○이만희 위원 직회부할 수 있다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진행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48페이지, 8번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에 관한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 위촉 시 지역……

○이만희 위원 전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사과하세요, 그거.

○전종덕 위원 뭘 사과해야 됩니까?

○박준태 위원 사과해야지요!

○전종덕 위원 뭘 사과해야 됩니까?

○이만희 위원 우리가 무슨 개혁 반대 세력입니까?

○박준태 위원 사과를 해야지!

○전종덕 위원 회의 진행에 협조하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전문위원, 가만히 계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깐……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개혁 반대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금주 위원 소리 좀 치지 말고 합시다.

○소위원장 윤준병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발언권 받아서!

○이만희 위원 발언권 받아서 할게요, 그러면.

○소위원장 윤준병 안 줍니다.

하세요.

○이만희 위원 발언권 받아서 하라면서요!

○소위원장 윤준병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 왜 안 됩니까? 여기는 소위예요, 소위!

○소위원장 윤준병 소위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 및 영상녹화물을 작성·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는 이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씩을 포함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도 중앙회와 동일한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사 선출 과정에서 회장과 그 내부 조합장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안됐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소수인 7인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 제도개선이 이미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50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중앙회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가 농협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 제도가 정부 등 외부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작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지주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제지주 사업과 관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중앙회 규정을 금융지주회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52페이지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부 의견에 정부대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합장 위원 수를 2명으로 축소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록 작성 및 이사회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경제지주 임원추천위 위원은 금융위 추천 대신 학계 추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임원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가 확대에 따라서 조합장 위원 수를 당초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모집·심사·추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회의 위원회 추천 과정 개입 금지와 위원회 요청에 따라 행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위원회 후보자 추천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여 의사록 작성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속기록 첨부 의무를 추가하면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경제지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금융위 추천 대신 학계에서 추천하는 걸 당초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전종덕 위원 발언 중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있으면,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만희 위원 또 왔다 갔다 하기는 뭘 왔다 갔다 해요? 저의 의견을 여기에 남겨 놓으셔야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 발언 중에서 마치 우리 당을 지칭하면서 농협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어떤 말씀 자체가 추후에 속기록에서도 삭제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 발언을 하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전종덕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만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애초에 오후부터 이 농협법을, 오전에 농협법 심사를 하다가 중단됐고 오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셔서 한 조항 넘어갈 때마다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방해하시고 그다음 조항도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계속 회의에 비협조적으로, 그것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법안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드린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이만희 위원 이 구성에서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이 법안을 계속 해태하면서, 지연하면서 이렇게 심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지금 우리 국민적 요구가 농협 개혁을 하라는 거고,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은 농협 개혁을 가로막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 말에 대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의사진행에,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61쪽.

○박준태 위원 의견 제시할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제가 발언권 드리지는 않았고요.

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인사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0개의 안건 중에 2건의 검토보고서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건 중 1건이 박덕흠 의원님이 제시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지요? 여기 써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안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0장 가까이 됩니다. 박덕흠 의원님의 이 내용, 이 조문 하나 바꾸는 데 제시된 의견, 검토보고서가 30장이라고요.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님이 낸 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안을 냈고, 이 조문 하나만 놓고 봐도 이렇게 다양한 검토의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보셨지요?’, ‘의견 없지요?’……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박덕흠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장님이 낸 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거를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여기 소위에 직회부하니깐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끝나셨지요?

다음.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농협중앙회 의견을…… 지금 검토의견, 관계기관 의견의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정부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고 농협중앙회는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다라는 식의 강력한 표현을 써 가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측하고 혹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이 별도로 없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안 보시면 공무원이 아니라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인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금융위에서 추천하는 1인이고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2인입니다. 이 조항을 보고 정부가 권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았습시다.

○임호선 위원 정부 측 생각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시다.

○박준태 위원 저 내용을 여쭙볼게요. 차관께 질문 좀 하겠습시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추천위 구성을 보면요 장관이 일단 1명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시다.

○박준태 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것도 확실하게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선 위원 그거는 학계 추천으로 해서 빼는 거 아닙니까?

○박준태 위원 지금 이거는 빼자는 거예요? 금융위 추천은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경제지주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추천을 빼자는 겁니다. 학계 추천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를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박준태 위원 지금 54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보면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3페이지의 윤준병 의원안을 보시면 거기……

○박준태 위원 윤준병 의원님 안을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정부대안을 59페이지에다 기재를 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9페이지 내용은 그게 아니라 경제지주회사의 인사추천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금융위를 빼는 거고요. 정부대안은 53페이지의 윤준병 의원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준태 위원 윤준병 의원님 안이 53페이지에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정부대안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부대안으로.

○박준태 위원 옆의 우측에 있는 거 이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박준태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장관, 금융위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2명, 학계 추천 1명 이렇게…… 정부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따라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보시면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이 3인 그리고 농업인단체,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공무원은 제외하고—이사회가 위촉하는 4인 해서 전체적으로는, 현행은 모두 농협의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추천과.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가 보다 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정부, 농업인단체, 학계 이렇게 추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부 측 인사가 늘어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투명성이 더 확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지금 관치 경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현재 조항으로 관치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장관이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면 정부의 입김이 커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지난 농협 감사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사추천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인에는 거기에 추천되는 외부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이 되다 보니까 공정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추천이라든지 외부 인사의 몫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공정한 인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현행 안에 보면 친절하게 괄호 치고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그러면 정부의 입김을 뭔가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런 조문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윤준병 의원님 안이나 정부가 동의하는 내용이 보면 장관 2명이서, 국무위원 2명이서 위원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치 경영 논란이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필요하다면 저희들 위원님 우려를 고려하여 괄호 치고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공무원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을 추천하시겠어요, 장관님이?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은……

○임호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런 말씀 취지도 감안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예컨대 조합장 위원 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부분은 3명을 유지해 달라라고 하든지 또 내용을 볼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구성이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는 사실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좀 늘리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농협중앙회의 반발, 관계기관 의견에 반대 의견을 완강하게 표현했는데 조합장 위원 수를 3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위원 수를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좀 더 보강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영역을 제가 볼 때는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점을 한번 찾아 주시고 인사위원회가 국민들이 볼 때나 조합원들이 볼 때 꼭 필요하고 이렇게 구성된다면 낙하산 인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거나 하는 식의 농협중앙회의 반발 내지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현행 이사회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농협중앙회장이나 기존 조합장들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인사가 형식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합장들만의 자체 인사 구성보다는 외적인 감독기구에서 인사 추천이 돼서 좀 더 견제와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천했는데 그 인원수와 관련해서 관치다 이런 우려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좀 배제한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합장들의 인사 3인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만희 위원 발언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질의할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차관님, 지금 인사추천위원회 보면 회원조합장 또 이사회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거의 다 구성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추천 인사 1명 정도 들어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전체 의사 자체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참여시켜서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관치 농협이라는 얘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합 자체가, 중앙회 자체도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운영되는 그런 사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1페이지, 9번 이사의 충실 의무 신설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중앙회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농협법에도 이와 유사한 중앙회 회원을 위한 최대 봉사의 원칙이라든지 전체 회원의 이익 보호 등의 그런 의무 규정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대안은 윤준병 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수정해서 62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서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원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조합원은 중앙회의 법적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합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윤준병 의안안을 수용하면서 저희들 또한 조합인 전체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의 회원인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조합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63쪽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3페이지, 10번 이사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 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자회사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회장의 암묵적인 지주회사 인사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주회사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입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의 내용이 모호한 면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위 유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6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의 내용을 봐 주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제4호에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중앙회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회원이나 조합원에 대해서 우대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를 추가해서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중앙회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장 등의 인사·경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안해 주신 4호의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조항은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2호 같은 경우도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4호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께서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중앙회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 될 때에 법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으로까지 이어지는 조의 항목으로 넣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4호는 아예 빼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2호 같은 경우도 ‘부당한 영향력’보다는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지 결국 똑같이 부당한 영향력 때문에 이 각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냥 그대로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담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기본적으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보통 지주회사가 대부분 다 100% 출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농협중앙회의 의견으로서, 현재 모기업으로서 자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여기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충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회

사의 경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시스템만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여부를 가리는 그런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경영을 위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영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만약에 내가 100% 출자한 회사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이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상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어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것도 임호선 위원 지적대로 전혀 구체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판단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회장이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 그리고 여러 가지 불공정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 개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 ‘부당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좀 모호하고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하는 지적이시니까 판례상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부당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어떤 내용이 적절한지 이걸 한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보충의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호선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4호를 여기서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라는 내용 문구를 넣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게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중앙회나 제3자와의 거래 요구를 이익에 반하여 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봐라,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요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67쪽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11번 중앙회장 및 조합장 이사 선출 방법 변경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및 회원조합장 선출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8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하여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전종덕 의원님 안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에 조합원일 요건을 삭제하고 있고 또 직선제를 위한 조합원 자격 정기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중앙회에 보고하며 농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금주 의원님 안은 이러한 직선제 대신에 중앙회장을 회원조합장과 중앙선관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원조합장인 이사 선출에 관해서는 윤준병 의원님 안이 이사의 선출 시기를 동시조합장선거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로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님 안은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 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윤준병 의원님 안에서 단순히 허용한다는 규정만 있는데 김선교 의원님 안은 선거운동 방법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70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듯이 선거 과열이라든지 막대한 선거비용 그다음에 회장의 대표성 강화가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우려 등이 있고 또 회장의 자격 요건에서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는 것은 외부 인사 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금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선거인단제는 71페이지 중단에서 보시듯이 현행 조합장 간선제보다는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정관에 위임을 하고 있어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모두 법적으로 회원이 아닌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그런 체계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편입시키는 별도의 입법 조치 같은 게 없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원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장 이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회원조합장 이사 선출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선거운동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2031년 동시조합장선거를 기점으로 회장과 조합장의 임기가 일치하게 되고 또 동시조합장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장 이사를 선출하도록 할 경우 현재같이 그런 회장 취임 이후에 조합장 이사가 선출되는 구

조가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정안들의 내용을 정리한 정부대안이 74페이지부터 제시돼 있습니다. 정부대안은 피선거권 요건 중에 조합원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자격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장선거와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조합장 이사 선출 시기 조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에서는 조합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장 이사 선출도 위탁 선거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장 피선거권으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회장선거와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므로 28년 6월 이후에 선출되는 조합장 이사의 선출 시기는 관련 조항 삭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차관계 여쭙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찬성하신다고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조합원들은 찬성을 하겠지요, 대체로? 여론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조합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도 변경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원들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조합원 직선제를 83%가 현재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찬성이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조합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렇겠지요, 권리가 강화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조합장들은 반대 의견이 많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장들은 중앙회에서 약 94~95%가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조합장들과 조합원 간의 갈등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견이 갈리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의견이 다릅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비용 문제인데, 비용 얼마나 든다고 추산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협중앙회에서는 좀 많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봤을 때는 회장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백칠팔십억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동시조합장선거와 병행한다면 예산은 더욱더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자료에 나온 중앙회 추산 400억은 어떤 기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거는……

○박준태 위원 71페이지 보면, 비용이 지금 한 400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뭐 산출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동시조합장선거 기준으로 유권자 일인당 1만 7000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1만 7000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선거비용 플러스 유세,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 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각 후보자가 쓰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아마 안 돼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후보자가 쓰는 비용이 확인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어쨌든 400억이 든다고 하면 이게 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몫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박준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께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숙지하고 의견을 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게 지금 간단한 선거는 아니에요. 200만 명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단체장급 선거 정도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를 뽑는 정당 선거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선거를 도입하는 건데 준비 과정이, 검토가 충분히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요.

아마 선거가 과열될 겁니다. 그리고 조직 선거 되고 뭔가 동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대결 구도도 나타나서 갈등적인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를 거쳐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합장선거 자체가 정치화되고 농협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지금 중앙회장 선거권을 누가 가지는 겁니까? 조합원들이 가지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사실은 이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만희 위원** 그 전에는 사실은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1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조합장 직선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 같은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해서 개정을 하고 그 첫 케이스로 24년도에 현 회장이 그 제도에 따라서 선출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정부는 똑같이 마치 조합장, 중앙회장에 대해서 조합원 직선제가 되면 아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조합장도 사실은 똑같이 각 지역에 있는 농협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회의 구성이 조합원 개개인에 의한 구성이 아니고 각 지역의 조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연합체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민주성이 더 강화된다는 논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앞에서 박준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용의 문제도 말씀하시고 포퓰리즘 말씀도 하시고 또 농협 조합의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입김이라든지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는 점에 대한 우려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농협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주성이 강화된다는 논리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을 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앙회장이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면, 여러분들 법안에서는 중앙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을 하시겠지만 또 다른 방향의 중앙회장의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 행사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71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려되는 걸로. 지금 중앙회의 법적 구성원은 농민이 아니라 회원 조합인 거잖아요. 이 회원 조합장들이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농민 조합원 전체로 확대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 만약에 직선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농협개혁추진단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협법상에는 당연히 회원은 조합으로 돼 있고요. 중앙회는 조합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합장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으로 바꿨을 때 그게 지금 현행법에서 가능할 거냐라고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토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회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적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저희는 특

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것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요.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이것을 앞뒤 아귀를 딱 맞춰서 가는 게 맞고요. 그걸 맞춰야 된다면 지금 중앙회법의 어떤 부분이 손질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두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리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자체 법무팀이 있으실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법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호선 위원** 오케이.

71쪽의 하단 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진천·증평·음성이 군 단위잖아요. 지방선거의 비례 의석이 각각 1석이에요. 1석이라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가지고 각 군에 한 명씩 비례 3석을 다 가져갔어요. 지난 18년도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3석을 다 가져왔고요. 또 6월 3일 앞두고 있지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중앙회의 법적 구성원이 조합장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일종의 미국 대선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로비가 가능하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정책적 의도가, 그렇게 해서 혼탁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기보다는 조합원의 의사를 한번 따라 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절충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18개 읍·면이 있는데 일부 몇 개 면에는 농협이 없지만 농협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개인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비례대표 선출 방식처럼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주신 밑의 두 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미국 대통령선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비례대표 지방 기초의원 선출도 그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그 조합장이 관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에 따라서 금품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검토는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조합원 직선제로 하고자 하는 목적·목표가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결국은 투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한테 방향성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직 조합장들의 공약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는 조합원을 위한 공약도 있지만 상당수의 공약은 조합장을 위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 중심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보다 더 농업인에게 가까이 붙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직선제가 능사는 아닌데, 이게 다 정답은 아닐 텐데 저는 과연 조합원 직선제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질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

또 조합원 직선제를 하면 지금보다 깨끗한 선거는 될 수 있겠으나 아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중앙회장 입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이것도 아마 대비는 하고 계실 텐데 무슨 선거공영제를 한달지 회계책임자를 뒀 가지고 공식 선거비용까지만 인정을 해서 하여튼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선거처럼, 총선처럼……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셨습시다만 지금 중앙회는 회원이 투표권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전종덕 위원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차라리 법에다가 조합원들도 회원으로 볼 수 있는 간주 규정 같은 것을 뒀 가지고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아예 해소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조합의 의사를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간접선거 방식에 대해서 윤 국장님께서 우려를 일부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그런 식의 혼탁한 선거나 부정한 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적으로나 또 선거 실무적으로 충분히 그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지금 논의가 그냥 조합원 직선제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안으로 제시됐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문금주 의원께서 제시한 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87만 중에서 판매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 이상 하
는, 쉽게 말하면 선거인단제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으로 하
면 조합원을 위한 회장이 안 되겠냐 이런 쪽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합원들한테 결
국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또 조합장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장을 타깃으로 한 중앙회장 후보자들의 활동이라는 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줄
어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금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사실
은 이 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대의원을 얼마로 구성을 하겠다는 건지 또
어떤 사람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래도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있는 조합
장님들보다는,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
지 않겠습니까?

차관도 그것 검토를 해 보셨을 건데 몇 명 정도 대의원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차관이
대답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차관이 대답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이만희 위원** 아니, 묻는 것부터. 대의원 전체를, 몇 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
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8만 명 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그 내용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선거……

○**이만희 위원** 그러면 8만 명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1100
명에서 8만 명 같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
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장님들, 조합 대의원들 그리고 일정 부분 판매를 좀
많이 하는 조합원들 이렇게 해서 추출하는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법에 제시된 안이 그렇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문금주 위원** 법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해 봤어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정관에만 그냥 배정하는 것으로, 8만 명 하는 것도 정부가 생각
하는 것이고 문 위원이 생각하시는 건 전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검토할 때 현행, 예전같이 대의원
제 그다음에 선거인단제, 직선제를 가지고 상당 기간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모든 제도가 결국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결론은 현재 이 선거
방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직선제가 그중에서는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선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만희 위원** 검토한 내용들이 이 중요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배포가 되
고 정부 의견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위원들한테 설명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조합원 직선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만을 고집할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도 그동안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고 또 회장이 자회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아무리 조합장 직선으로 가도, 현행대로 가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돈 많이 들여 가면서까지 조합원 직선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물론 장치를 많이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결국에 저는 이건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제도 관련 논의하면서 많이 나와서 충분한 논의가 됐고요.

그때 결론은 이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농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중앙회장은 어떤 모습으로 농업인의 대표성을 갖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과 내린 결론은 중앙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농업 관련 FTA든 WTO 할 때 과연 그동안 중앙회장이 농업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 왔느냐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대표성을 확실히 하면서 진정한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자.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통해서, 경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장치들은 명확히 함으로써 회장은 대외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조직이라든가 사업구조로 바꾸자는 게 그때 논의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론으로 직선제를 도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71쪽예요,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표권은 회원인 조합에 부여하되 조합의 의사를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정된 의사를 가지고 투표하는 방식 이것도 검토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동시 선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불가능하지요?

○**임호선 위원** 거기서 오픈한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그냥…… 미국 대선 방식이에요, 가부투표 따로 안 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합장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표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동시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드렸는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 보면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투표에 참여함으로 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쳐서 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합이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자격 조합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낙선

자는 정말로 열심히 뒤집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할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할 텐데 그때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합장 선거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 급증한 사람들이 실제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니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든가 직원들이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한계든 뭐든 이런 문제로 제대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합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건데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중앙회장의 직선제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여전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정리를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조합별 실태조사를 해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중앙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26년에서 27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 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그 정도 하시고……

○**임미애 위원** 그걸로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안 해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특별한 조치나 정책이 없으면 나중에 중앙회장 선거에서 실제로 선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아니, 문대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대림 위원** 중앙회장의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선제로 가면 그 대표성이 더 강화되나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별·품목별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직선제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 제주도 같은 지역인 경우에, 과수 중심인 경우에 오히려 직선제인 경우…… 글썄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직선제 장점이 있겠지요. 국제적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른 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도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문대림 위원** 사례가 있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지요. 우리나라처럼 조직 규모나 자산 규모 이렇게 큰 데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이면 신용, 경제면 경제, 규모 측면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적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외국인 경우에 직선 사례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사들 호선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법들 연구 안 하나요?

그리고 문금주 의원안 중에 전문위원께서 주신 내용, 선거인단체 관련해 가지고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보완한다면 농림부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농협개혁추진단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장단점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직선제를 하는 것이…… 그동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대표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권한 집중의 문제, 포폴리즘의 문제, 특히 저희 같은 지역인 경우에 지역 그리고 품목에 대한 갈등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요? 그건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라고 보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품목 간 이런 것보다는 아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협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좀……

○**문대림 위원** 벼나 과수 중심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직선제로 할 경우에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갔을 때 지역·품목에 따른 갈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는 그 문제는 아마 기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거의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도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 보면 특정 품목을 했다고 해서 중앙회장이 됐다고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임호선 위원** 중앙회 법적 구성원이 아닌 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자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검토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법률 해석을 받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문금주 의원님 안 중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누구를 몇 명 할 거냐라고 하는 판단,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가지고 그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 심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 매출 얼마 이상 이렇게 선거인단을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하

면……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은 배심원제에 맞게끔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 매출을 잘 못 올리는 시골의 어려운 농부입니다. 조합원이예요. 그래도 선거권을 행사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려면 추첨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얼마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선거인단이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거인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임호선 위원** 그래도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거는 정말 민주성의 원리에 전혀 이해가 없거나 기초가 없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음부터 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자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준조합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거는 정부가 이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토된 사항들을 문금주 의원이 제시한 대의원 논의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정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 했던 내용이 조합장 직선제이다 보니까 인원은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논공행상과 낙하산, 모럴해저드 이런 문제의 온상이 됐다, 이 선거제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답아서…… 실제 조합원은 회원의 조합원이, 중앙회 회원이 아닌 만큼 거기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리 검토된 내용, 특히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법리 검토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그리고 이 부분 적합성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영제를 운영할 계획이고 정부가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된 공영제 운영 계획 또 정치적인 독립성·적합성……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조합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조합원이 중앙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정부대안으로 보면 명백히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되고 회원의 조합원이되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이나 또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제대로 불식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좀 더 정치하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만희 위원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회장의 선출 자격,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관련해서 아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그간에 오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맞으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어쨌든 회원조합의 어떤 그걸로 한정한다는 게 일단 이 자리에서 드러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는 그 사항은, 저는 만약에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자료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피선거권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면서 농협의 신용·판매사업을 일정 부분 이용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하고 계신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쉬었다 할까 했는데 좀 진도 나간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조금 정회하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조감위원회 하는 내용까지 중요 내용이니까 그 내용까지는 설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84페이지, 12번 회장의 겸직 제한은 중앙회 회장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 또는 직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최근 중앙회장의 겸직에 따른 높은 보수 수령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직무상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겸직 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중앙회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다른 업무 또는 직위 종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무 제한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예.

○**문대림 위원** 차관님, 전 질의에 대해서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요. 총자산이 프랑스인 경우에 3500조 원 그리고 네덜란드인 경우에 970조 원, 조합원 수가 프랑스는 1100만 명, 네덜란드는 200만 명, 독일인 경우에 1800만 명, 일본인 경우에 1000만 명 이상.

그런데 아까 차관 대답은 조합원 수나 총자산 규모의 문제가 외국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린……

○**문대림 위원** ‘그뿐만 아니라’가 아니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일부는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일부라고 얘기해야지. 선진국인 경우에 보면 조합 총자산 규모나 회원 수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산 규모나 조합원 수가’ 이런 식으로 차관이 얘기하면 되나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표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의가 아니라 반성하세요, 반성! 금방 검색하면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턱도 안 되는구먼.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위원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선에 대한 국제적인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사실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박준대 위원** 위원장님, 이게 다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문제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중앙회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회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직무 관련 유관 단체 종사 금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86페이지입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회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중앙회장의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중앙회 운영의 준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앙회 임원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선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에게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자칫 중앙회장의 권한 남용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문에서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확정판결 이후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안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직의 준법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

합니다. 그리고 농감위원장의 수사 또는 직무정지 가능하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현재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수사 의뢰 의무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유사 입법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건 적절한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수사 의뢰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유사 입법례 자료를 좀 쥬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밑의 각주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87쪽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89페이지의 14번 중앙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회가 5년마다 중앙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의 수립·평가를 위해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회장은 선출직으로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회의 정책 추진에 이러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를 반영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회장의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정책 설정 필요성과 기존 정책의 안정적 추진 필요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대외환경 변화, 회장 교체 등의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92페이지……

○이만희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지금 5년 단위 중앙회 발전계획 수립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출된 중앙회장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해야 될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회장이 4년 임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회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이 바뀔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일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회장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나름대로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중앙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현재 법상에는 발전계획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논의 과정에서 중앙회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이게 협동조합법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5년이라는 계획을 고민할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보통 지역에 가면, 지자체장님들도 보통 4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중앙정부 계획은 대부분 5년 계획, 10년 계획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출된 지자체장이 바뀔 경우에는 계획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경제사업이라든가 농협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중앙회의 위상과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지자체의 위상은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을 같은 선상에 놓고서 ‘5개년 계획을 너희 수립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앙회는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업 활성화, 회원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합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호선 위원** 저 어렸을 때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야심차게 100억 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 당시 국민학교 위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쪽 이렇게 써 놨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5개년 계획이 싹 없어졌지요. 왜냐하면 5년 계획이라

는 게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5개년 계획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발전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지요, 그게 첫째.

두 번째, 중앙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정관에다가 만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기껏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기본계획으로 제 기능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중앙회 회장 바뀌고 임원들도 바뀌고 하면 먼지 쌓여 있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금 있습니까? 세울 수 없어서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 봤자 급변하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중동전쟁 날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발전계획 수립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이 문제 5년 계획 단위도 얘기하시고 좋은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논의하시면서 정부의 입장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정부 측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은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가부간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발전계획 자체가 5년 단위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4년이고 이렇게 해서 저거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다 최소한 연임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항들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검토해서 의견들도 같이 주시고.

사실 이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의회에서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지금 이걸 하거든요. 학계의 얘기도 들어 보고 당사자들 얘기도 들어 보고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하면 정말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걸 기화로 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이때 ‘옳다, 잡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정부가 농협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농협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세계 가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여실하게 보이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들이 있으면 의원실에 좀 충분히 주십시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검토를 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면 자료들도 충분히 주셔서, 여기 논의의 장에서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들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에게도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것은 이 관련해서 최소한 공청회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92페이지의 15번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계획 보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의 자의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사전 개입을 하는 경우 외부 영향력에 의한 자금 배분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이러한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한 회장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서 지난번 농협법 개정 시 제도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안은 9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대안 내용은 정부에 대한 보고를 정부에 대한 협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95페이지의 16번 중앙회 정보 공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윤준병 의원님 안은 중앙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회원 및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문금주 의원님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99페이지부터 제시하고 있는 정부대안이 당초 제안된 윤준병 의원님 안보다 공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회원 및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이 현행보다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있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안을 드렸는데, 99페이지 보시면 약간 오타가 있는데 수정의견에서 윤준병 의원님 안의 159조의3에 대해서 삭제라고 했는데 삭제가 아니라 윤준병 의원님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농협중앙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한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대안처럼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구가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에서는 윤준병 의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일반적인 사항은 현재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포함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회원 및 조합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할 경우에는 과도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기 때문에 10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금주 의원님이 제시해 준 안에 대해서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를 그냥 외부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여러 가지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신청하고 받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앙회에만 특별하게 이런 규정을 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이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서류, 예를 들어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보다 더 중앙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회계장부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현행 규정은 중앙회가 조합의, 아까 저희가 검토했던 조합의 정보공개 조항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장부 같은 경우 조합 같은 경우는 100인 또는 100분의 3 조합원 이렇게 돼 있지만 중앙회로 넘어오게 되면 회원조합 100개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조합이 신청을 해야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100분의 3 같으면 33개 그 정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조합 숫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 때문에 중앙회 조합에도 감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반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만희 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만희 위원 특별하게 더 이렇게 특별 조항을 두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재 1인의 청구 범위는, 사업보고서·정관·의사록·결산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 공개는 되고 있는데 그 수준보다는 좀 강화

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아까 말씀하신 회계장부나 이런 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1인이 청구해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한데……

○임미애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운영의 공개와 관련된, 여기 97쪽의 65조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운영의 공개는 지역조합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역조합은 운영의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회와 관련해서는 회원조합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용 규정으로……

○임미애 위원 준용 규정으로, 그러니까 회원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정보공개하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중앙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거고 이제는 준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명백하게 조합향을 달아 두자라는 취지인 거지요. 그리고 회원조합의 100분의 3이 동의를 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회계장부에 대해서는요.

○임미애 위원 회계장부에 대해서.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개를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다 개인이 신청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개인이 아니라 회원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회원조합이 이걸 신청을 할 때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중앙회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법에 적용 대상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적용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개인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합니다. 다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게 안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회계장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계장부 같은 경우 농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농협 입장에서 보면 특별법인 농협법을 근거로 해서 100개 조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조합에 담기면 이제는 일반 조합원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회원조합이 아니어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17조하고 18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감사위원회 폐지 또는 독립성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 중앙회 내에서 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과 전종덕 의원님 안은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김선교 의원님 안과 문금주 의원님 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선출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 김선교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회원이 조합감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장관에게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고 또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금주 의원님 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페이지의 18번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는 표로 돼 있고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님 안과 전종덕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회 외부에 별도의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가 중앙회와 조합 등뿐만 아니라 중앙회 자회사와 농협 관련 기관 등 농협계통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인적 구성 및 운영이 중앙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경비는 정부와 농협계통조직의 출연금 및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님 안은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가 윤준병 의원님 안보다는 다소 좁은데 중앙회, 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회사 및 관련 기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농림축산부장관이 임명하며 부위원장보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농협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조합감사위원회를 비롯한 농협 내 자율규제 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입법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개입이 영구적으로 법제화될 경우 정부 영향력이 증대되고 또 농협

의 자율성과 자율규제 역량의 신장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댈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 중앙회의 지도 권한과 감사 권한을 이처럼 분리할 경우 지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117페이지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안은 118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농감위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또 금융위 추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120페이지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조합감사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설명 들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이만희 위원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설명 들으시고……

○이만희 위원 중요한 사안이고 또 직접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사항들은 다음 회기로 옮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번 들어나 보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중요 핵심 사안이니까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이 내용을 하시자고요.

○이만희 위원 이 사안 자체를 제출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한번 들어 보시자고요.

○문금주 위원 들어 보시자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감사위원회는 폐지를 하면서 114쪽의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만 농협감사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금융위 추천을 삭제하면서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되 대통령이 아닌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위원의 상임 규정과 위원장후보 명단 작성·관리 규정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감위 감사는 상임으로 규정하되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농감위의 업무에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추가하면서 감사 대상에 농 금융지주를 삭제하고 임의 규정으로 조문화하되 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와 협의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금감원의 감사 이행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과 업무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농감위원장과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에 조치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조항에 농감위원, 감사와 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를 추가하면서 항 번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밖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정부 개입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위원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낮춰 봐야 도긴개긴인데 이거를 굳이 장관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그거 하나 자료 한번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조함원 직선제로 해서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상당히 높여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무슨 책임경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한 개입 못 하게 힘을 싹 빼 버렸단 말이지요, 겹직도 못 하게 하고. 예를 들면 농림부장관한테 자금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든지 협의든지 하게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과연 중앙회장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정부에서 구상하는 대우랄까 아니면 현재하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위상 그다음에 권한 이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진짜 그게 궁금하네요. 이것은 책임경영을 하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완전히 간판으로만, 전 농민의 수장으로서 대변자 역할만 하기를 바라는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아까 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 이걸 비교해서 자료로 한번 쥬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도 농협감사위원회 조직을 독립화해야 되겠다는 원래 취지는……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을, 특히 일반 지역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장한테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별도 독립법인 형태의 감사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던 감사권을 뺏어 가는 듯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논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 문금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관치에 대한 내용들이 크다고 하니 지금 현재 예전의 입법안으로 돼 있었던 내용보다는 정부대안이 완화된다는 했지만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올바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45페이지의 19번 중앙회 감사기구 축소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1인의 상임감사 체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심사하신 농협의 감사기구 개편안과 연계된 내용으로서 중앙회장이 감사위원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부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이를 1명의 상임감사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제도를 이 개정안과 같이 폐지하더라도 감사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현행 129조 규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해당 조문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개정하면서 중앙회의 지역농협 준용 규정인 161조는 전종덕 의원님 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감사위원회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임감사 체제로 개편을 하되 감사위원회 중 자회사의 감사 기능은 농감위로 이관하기 때문에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54페이지의 20번 중앙회의 자회사 감독권 폐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자회사 감독권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폐지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중앙회의 자회사 및 경제·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해 감독권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또 중앙회로부터 자회사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회의 지도·감독권 폐지가 농협 내부의 책임경영 체제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원회 업무 영역과 중복되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 개입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이 157페이지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는 금융위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자회사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서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감독권은 농감위에 위탁하고 필요시 농감위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감독 범위에 금융지주는 금융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외했으면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금융위

에 농감위 검사 요청 시 금융위의 이행 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 금융지주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금감위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21번 유죄판결 임직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개정안은 중앙회나 조합 등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상 차질을 최소화하고 또 조직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림식품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새마을금고법에 입법례가 있기는 합시다마는 농림식품부장관이 임명권자가 아닌데 이렇게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중앙회의 업무 수행상 차질을 방지하고 조직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164페이지의 22번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은 금품선거 관련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고 또 김선교 의원님 안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전종덕 의원님 안은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하려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6개월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비해 이보다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개정안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대안은 윤준병 의원안의 3년 연장과 김선교 의원안의 10년 연장 사항만 수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법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윤준병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69페이지의 부칙입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마다 좀 다양하게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이 조합감사위원회 폐지 및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2028년 중앙회장 선출 시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28년 6월 30일까지인 기존 감사위원의 임기 및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그리고 만약 직선제가 수용될 경우에 직선제 선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25페이지의 안 30조 선거범죄로 인한 제명과 관련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해서 법 시행 전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와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신장식 의원님 안과 임미애 의원님 안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임미애 의원님 안과 같이 이 법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안은 172페이지부터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부칙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5조의2(농협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중앙회의 지원) 규정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는 부칙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조감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폐지하고 농감위 설립위원회 설치 후 농감위의 정관을 농식품부에 인가, 인가 후 설립등기, 등기 후 농감위원장에게 재산을 인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회는 농감위 설립 계획을 3개월 내에 설립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조합원 제명 관련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미적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농감위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 2쪽의 제5조의2에 농감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전종덕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진행발언?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안건이 통과가 돼 버려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통과는 아니고 하여튼 심의는……

○전종덕 위원 심의가 끝나 버렸는데,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저도 법안을 냈고 감사위원회를 독립화해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 드리고요.

지금 안 그래도 농식품부장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 관련해서 자율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되면 자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치행정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위원장이 독립성을 가지려고 해도 이렇게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 장관이면 독립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위원장은 조합원 직선으로 뽑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관치나 자율성 침해나 이후에 독립성의 확대나 확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직선으로 뽑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부장관이 뽑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1차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자료 공개 청구 요건과 관련해서 10인으로 일부 정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농협감사위원회의 형식과 관련해서 관치가 너무 심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오늘 소위에서 심사된 내용에 보완이 될 사항은 좀 보완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심사된 내용을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일단 1차 축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쟁점들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내용,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내용, 농협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이 내용들이 일단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법안소위 때 가부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공청회 계획을 준비할 텐데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내용들이 심도 있게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준태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복지국장 조영희
산림보호국장 이광호